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55호
2025. 3. 31.(월)



목 차

◆ 공 고

제2025-1064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2
-----------------------------------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64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조례안 (18건)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3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실 (경제정책과)
	5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6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본부 (박물관과)
	7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본부 (박물관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10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11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12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13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15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1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17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18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실 (교통정책과)
동의안 (9건)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국 (재산관리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2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조성 및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3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정원도시국 (조경과)
	4	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정원도시국 (조경과)
	5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실 (돌봄복지과)
	6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7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8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9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교통실 (주차계획과)
의견 청취안 (3건)	1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주택실 (건축기획과)
	2	서울특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주택실 (주거정비과)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홍익대학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시 전체 규제 조정을 총괄하고 규제개혁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불편·불합리한 규제의 집중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및 사무분장 명시
- － (기획조정실) 규제 조정 및 개혁 총괄을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3급)」을 신설하고, ‘규제 평가·개선 등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사무분장으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별표2(사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 25. 3. 13. ~ 3. 25.) 결과: 의견제출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실” 을 “기획조정실 밑에 규제혁신기획관을, 경제실” 로 한다.

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규제 발굴·평가·개선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② (생략) ③ <u>경제실</u>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고독정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기획관을 둔다.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획조정실</u> 밑에 <u>규제혁신기획관</u> 을, <u>경제실</u> ----- ----- ----- ----- ----- -----.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u><신설></u>	제5조(기획조정실)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규제 발굴·평가·개선 등</u> <u>규제개혁에 관한 사항</u>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구 개편 및 소관 사무 조정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본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 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 ☎ 2133-672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규제개혁 전담 조직의 기구 정원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혁신기획관(3급)」, 「규제개선담당관(4급)」 신설에 따라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조정
- (본청) 3급 +1명, 4급 +1명, 5급이하 △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별표2(사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 25. 3. 13. ~ 3. 25.) 결과: 의견제출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26	16		1	9	
4급	270	165	19	8	71	7
5급 이하 소계	10,205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 ----- -----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1,730						총계	11,730					
(생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계	10,700						일반직계	10,700					
(생략)							(현행과 같음)						
3급	25	15		1	9		3급	26	16		1	9	
(생략)							(현행과 같음)						
4급	269	164	19	8	71	7	4급	270	165	19	8	71	7
(생략)							(현행과 같음)						
5급 이하 소계	10,207						5급 이하 소계	10,205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 등 위촉에 관한 사항
- 나. ‘규제총괄관’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3. 13. ~ 3.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장보금(☎2133-668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제시책”을 “규제정책”으로,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을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8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2조,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들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4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으로, “위원장이 미리”를 “위원장 중 행정1부시장이 미리”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u>규제시책</u> 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규제정책</u> ----- ----- ----- -----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 -----.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신 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생략)	제4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제5조(구성) ①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
시장과 위원 중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생략)

<신 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시장 -----

-----.

③ _____

말는다. _____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

위원장 중 행정1부시장이 미리
-----.

제5조 ~ 제7조 (생략)

제8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
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
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신설>

제8조 ~ 제10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말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
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

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
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
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
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
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
· 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

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
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
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
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
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
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
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
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
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신 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

제10조 (생 략)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
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
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
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앞 쪽)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제총괄관’ 을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자격기준, 업무범위, 임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13조 제2항 제6호의 자격요건인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을 참고하여 인건비는 3급 연봉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
- ※ 3급(상당) 공무원 연봉 상한액(110,826천원)을 시간당 수당으로 계산(‘ 25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 비용은 2025년 7월부터 발생하고 향후 5년간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규제총괄관 수당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	-	-	-	-	-	-
	소계(a)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수입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 수당은 3급 공무원 연봉 상한액(110,826)을 시간당 수당(52,474원*)으로 환산하여 추계
 * 52,474원 = 110,826천원/2,112시간(주 40시간 × 4.4주 × 12개월)

※ 1차년도는 시행일 2025년 7월(6개월)을 기준으로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국비						
	지방세수입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무행정팀장 박정아

담당자 장보금 (02-2133-6684, goguma@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규제총괄관 총 비용(합계) ≒ 181,350천원(연평균 36,270천원)

－ 산출방식 : 연간(2025~2029) 비용의 합산

: 40,300천원* × 4년(‘26.~’29) + 20,150천원(‘25.7.~12.)

≒ 161,200천원 + 20,150천원 ≒ 181,350천원

* 연간 규제총괄관 수당

= 3급 공무원 최대연봉액의 시간급 환산액 × 주2일 전일 근무가정 시 연 근무기간

= 52,474원 × 8시간 × 2일 × 4주 × 12개월 = 40,300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립과학관 명칭 및 위치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추가(안 제3조)
- 나. 조례 일부개정(' 24.5.20.)에 따른 19세 이하 관람료 면제를 본문에 명문화하여 현행화(안 제6조제1항제3호)
-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신설(안 제6조제1항제13호)
- 라. 권한의 위임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으로 명확화(안 제18조)
- 마. 법령·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문구 등 정비(안 제6조제1항제9호, 제6조제2항제1호, 제16조 및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3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5. 3. 5. ~ 3.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경제실 경제정책과 이정훈 (☎ 02-2133-522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하계동)
2.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창동)

제6조제1항제3호 중 “6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6조 중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립 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 원구 한글비석로 160(하계동)에 둔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 되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하계동) 2.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 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 (창동)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2. (생략)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 8. (생략)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 ~ 12. (생략) <신설> 13. (생략)	제6조(관람료 감면)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19세 ----- --- 4. ~ 8. (현행과 같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수 급자 10. ~ 12. (현행과 같음)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2. ~ 5. (생략)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제17조(시행규칙) -----
필요한 -----
--.

제18조(권한의 위임) -----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

1. ~ 6. (현행과 같음)

(앞쪽)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제6조(관람료 감면) 제2항의 관람료 감면대상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를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세입감소가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행기간 : 비용은 2025년 5월 19일(조례 공포·시행예정일)부터 발생
- 2024년 과학관 매표수입(2개소) : 66,441천원
- 대상시설 및 금액

대 상 시 설	입장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2,000원 (성인기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2,000원 (성인기준)

- 과학관 성인 관람객 방문비율 : 1.03%
 - 20~64세 관람객(67,176명) / 20~64세 서울시 인구(6,540,000명) = 1.03%
 - ※ 2024년 시립과학관 20~64세 관람객 수 : 67,176명
 - ※ 2024년 서울시 20~64세 인구 수 : 6,540,000명
-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람객/년 추정 : 12,000명 × 1.03% = 124명/년
 - ※ 2024년 서울시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 : 12,000명
- 비용추계 산식
 - 1차연도 : 124명 × 2,000원 × 225일/365일 = 152,000원
 - 2차연도 : 124명 × 2,000원 = 248,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합계
수입	감면입장료	152	248	248	248	896
	소계(b)	152	248	248	248	896

(앞쪽)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국비		-	-	-	-	-
시비	지방세수입	-	-	-	-	-
	세외수입	-	-	-	-	-
	지방채 등	-	-	-	-	-
민간		-	-	-	-	-
기타		-	-	-	-	-
합계		-	-	-	-	-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이정훈(02-2133-522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항목별 비용추계 방법

- (감면비율) ' 24년 성인관람객 67,176명 / 市성인인구 6,540천명 = 1.03%
- (감면인원) 市거주 장기복무 제대군인 12,000명 × 1.03% = 124명/년
- (감면비용) 124명/년 × 2천원 = 약 250천원/년

2. 비용추계 산출 기초자료

- 최근 3년 과학관 성인 관람객 및 전체수입 현황 (' 24년 성인 관람객 67,176명)
- 2025년 서울시립과학관 종합 운영계획(총무과-1175, ' 25.2.5)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 계	' 22년	' 23년	' 24년
관람객(성인)	125,720	25,996	32,548	67,176
관람수입(전체)	212,984	70,393	79,018	63,573

※ ' 24.5.20. 서울시립과학관 조례 개정 이후 19세 이하 관람료 무료

※ ' 24.8.20.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 서울시 인구통계 (20~64세 인구 6,540천명)
- ' 24년 4/4분기 서울특별시 등록인구통계(열린데이터광장, data.seoul.go.kr)

(단위 : 천명)

구 분	합 계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인구	6,540	582	818	822	669	728	691	794	730	706

- 지역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현황 (서울시 약 12,000명)

- 국가보훈부 통계 자료(제대군인정책과-338, ' 25.2.2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대상 확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요건 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협의절차 단축(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김정학 (☎2133-354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협의절차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을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를 “평가서”로, “협의 절차”를 “협의절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협의를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협의를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 -----, -----.
1.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삭 제>
2.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삭 제>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삭 제>
②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협의 절차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 평가서 ----- ----- 협의절차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행정5급 김정학(02-2133-3546)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장기복무 복무군인을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안 제9조제1항제18호 신설).

나. 문구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안 제9조제1항제11호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3. 5. ~ 3.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 (☎2133-423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2조제1항제1호 중 “(3월~10월) :” 을 “(3월~10월):”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월) :” 을 “2월):”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무료 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9조(무료 관람) ①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 17. (생략)	12. ~ 17. (현행과 같음)
<신설>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8. · 19. (생략)	19. · 20. (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기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사용기간) ① ----- ----- -----.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	1. ----(3월~10월): -----

터 20: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u>2월</u>) : 09:00부터 19:00까지 ② · ③ (생 략)	----- 2. ----- <u>2월</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무료관람)제1항제18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관람료)제1항제18호를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련 세입이 감소할 수 있음
 - 현행 동 조례 제8조(관람료)제1항제2호¹⁾에 따라 특별전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어 본 개정안 제9조(관람료)제1항제18호를 변경·신설 시 관람료 수입 순감소가 예상됨
 -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최근 개최한 특별전²⁾ 통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려 하였으나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문의결과 무료관람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단순 추정 시 실제 무료관람객 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가 곤란함

구분	종 류	관람료	관련 조례	비고
1	상설전	무료	현행 제8조(관람료)제1항제1호	
2	소장작품 기획전	무료		
3	기획전	현행 무료(심의결과)	현행 제8조(관람료)제1항제2호	
4	특별전	일정금액 관람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 (☎2133-4237)

-
- 1) 제8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2. 기획전과 **특별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2) 2023. 4. 20. ~ 2023. 8. 20. 《에드워드 호퍼:길 위에서》 성인 관람료 17,000원(얼리버드 성인 2인 20,000원) 등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안 제5조제1항제18호 신설)

나.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3. 5. ~ 3.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 (☎2133-423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3월~10월) :” 을 “(3월~10월):”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월~다음해 2월) :” 을 “(11월~다음해 2월):” 로 한다.

제5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7조제1호 중 “기본시설 :” 을 “기본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속시설 :” 을 “부속시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③ (생략)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 ----- ---. 1. ----(3월~10월): ----- ----- ----- ----- 2. -----(11월~다음해 2월):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7. (생략) <u><신 설></u> <u>18.·19.</u> (생략) ②·③ (생략)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 -----.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9.·20. (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	제17조(대관범위) ----- -----

(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2. 부속시설 : 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그 밖에 옥내·외의
공간

-----.

1. 기본시설: -----
2. 부속시설: -----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관람료의 면제)제1항제18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5조(관람료의 면제)제1항제18호를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람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 확인결과 현재 서울시립박물관은 제4조(관람료)제1항¹⁾에 따라 무료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규정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세입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같은 조례 제4조(관람료)제2항¹⁾에 따라 박물관²⁾ 자체 기획전시나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 유선조사 결과 현재까지 관람료를 받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향후 발생할 개연성 또한 드물기 때문에 예외적 상황으로 함
- 또한, 동 개정안은 정책에 따른 혜택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2133-4237)

-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람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 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총 6개 박물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통해,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 및 병역에 대한 예우·존중 문화 확산
- 나. ' 19. 5. 2. ~ 12. 31.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할인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정비 및 현행화

2. 주요내용

- 가. 시립체육시설 입장료(제9조) 및 개인연습사용료(제10조제1호) 감면대상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안 제9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호다목)
- 나. 조례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할인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다목 삭제)
- 다. 문구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3. 5. ~ 3.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방준흠 (☎ 2133-267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하는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질높”을 “질 높”으로,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운영을”을 “운영을”로,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을 “운영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이하”를 “자(이하”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중 “진행중”을 “진행 중”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체육경기:”를 “체육경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체육 행사:”를 “체육행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행사:”를 “공공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예술행사:”를 “문화예술행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행사:”를 “일반행사:”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시가”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조기:”를 “조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간:”을 “주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야간:”을 “야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조기:”를 “조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간:”을 “주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야간:”을 “야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중 “주간사용시간”을 “주간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성 인 :”를 “성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 :”를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 :”를 “어린이:”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예술행사 :” 를 “문화예술행사:”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 행사 :” 를 “일반행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다만,” 을 “다만, 제5조제3항제 4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주최측” 을 “주최 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중 “수급자 :” 를 “수급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용자 :” 를 “이용자:”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본인 :” 을 “본인:” 으로 한다.

제10조제1호가목 중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을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으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을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본인 :” 을 “본인:”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이용자 :” 를 “이용자:”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 :” 를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가족, 「장애인복지법」” 을 “가족, 「장애인복지법” 으로,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을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으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을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본인 :” 을 “본인:”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차상 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를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로, “자 :” 를 “자:” 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당일 :” 를 “당일:”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일전 :” 를 “10일 전:” 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일전 :” 를 “5일 전:”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일전 :” 를 “1일 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60일전 :” 를 “60일 전:”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0일전 :” 를 “30일 전:” 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20일전 :” 를 “20일 전:”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0일전 :” 를 “10일 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20일전 :” 를 “20일 전:”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5일 전 :” 를 “15일 전:” 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일전 :” 를 “10일 전:”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5일전 :” 를 “5일 전:” 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1일전 :” 를 “1일 전:” 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 중 “60일전 :” 를 “60일 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전 :” 를 “30일 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일전 :” 를 “20일 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일전 :” 를 “10일 전:”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위해발생시” 를 “위해가 발생할 때”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해서는 2026. 1. 1.부터 제9조 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u>설치·운영</u>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u>건강증진</u> 과 <u>여가선용</u> 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설치·운영하</u> <u>기 위해</u> ----- ----- <u>건강 증진</u> <u>과 여가 선용</u> ----- -----.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 <u>별표1</u> ”과 같다.	제2조(설치) ----- ----- ----- <u>별표 1</u> ----- -----.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u>질높은</u>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u>관리·운영</u> 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 ----- <u>질 높</u> ----- ----- ----- <u>관리·운영(이하 운영</u> <u>이라 한다)</u> ----- -----.
② 시장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u>관리·운영</u> 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u>관리·운영</u> (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	② ----- ----- <u>운영을</u> ----- ----- ----- <u>운영함</u> ----- -----

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4조의2(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① (생략)

② 시장,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2.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 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3. (생략)

제5조(사용허가) ①·② (생략)

---.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자(이하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진행 중 -----
-----.

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 다만,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육행사 : 제1호의 체육경기 외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행사. 단, 상업적 목적(광고, 방송 등) 행사는 제외한다.

3.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4.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

같음)

③ -----
-----.

1. 체육경기: -----

-----.

2. 체육행사: -----

-----.

3. 공공행사: -----

4. 문화예술행사: -----

5.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
종 경기 및 행사

④·⑤ (생략)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
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
최·주관하는 체육행사

2. ~ 7. (생략)

② (생략)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
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
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

1. 하절기(4월~9월)

가. 조기 : 05:00~08:00

5. 일반행사: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1. ----- 시가 -----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① --

-- 각호-----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시간 등) ① -----

-----.

1. -----

가. 조기: -----

나. 주간 : 08:00~19:00

다. 야간 : 19:00~다음 날 05:00

0

2.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가. 조기 : 06:00~09:00

나. 주간 : 09:00~18:00

다. 야간 : 18:00~다음 날 06:00

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7조(사용료) ① ~ ③ (생 략)

④ 별표 2의 사용료 부과·징수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 : 19세 이상

나. 주간: -----

다. 야간: -----

-

2. -----

가. 조기: -----

나. 주간: -----

다. 야간: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 주간 사용시간-----
--.

제7조(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성인: -----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3. 어린이 : 12세 이하

제8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생략)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9조의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

2.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③ 관람권사용료의 납부·정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생략)

제9조(입장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를 관

2. 청소년: -----
--

3. 어린이: -----

제8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문화예술행사: -----

2. 일반행사 : -----

③ -----

---, 다만,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료) ① -----

람하거나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 선수 등이 경기·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 4.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

-----.

1. (현행과 같음)

2. ----- 주최 측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2.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
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
100분의 30 감액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
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
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
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생 략)

5.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
른 임산부 본인 : 면제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

----- 수급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2. -----

----- 이용자: -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

----- 본인: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
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
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
한다.

가.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1. _____

가. -----

5·18민주유공자,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2제1항 -----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

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 100분의 50 감액

나.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 100분의 30 감액. 다만,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라. (생 략)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장법」-----

----- 본인: -----

나. ----- 이용

자: -----, --

-----.

다. -----

---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

군인: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
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바. (생 략)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
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
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
나만을 적용한다.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
재된 가족,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 및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
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

바. (현행과 같음)

2. -----
-----, --

-----.

가. -----

--- 가족, 「장애인복지
법」-----

-----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
항 -----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산부 본인 : 100분의 50 감
액

나.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
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
인 자,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
액

다. ~ 마. (생 략)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사. (생 략)

3. ~ 5.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 제
②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
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
(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 본인: -----
-

나. -----

-----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 자: -----
-

다.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사.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② -----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가. 신청 당일 : 전액 반환

나. 10일전 : 전액 반환

다. 5일전 : 10분의 9

라. 1일전 : 10분의 7

2.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다만, 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60일전 : 10분의 7

나. 30일전 : 10분의 5

다. 20일전 : 10분의 3

라. 10일전 : 10분의 1

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 다)

가. 20일전 : 10분의 9

나. 15일전 : 10분의 8

다. 10일전 : 10분의 7

라. 5일전 : 10분의 6

마. 1일전 : 10분의 5

③ ~ ⑤ (생략)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행사·경기의 개최일 전 관람취소

-----.

1. -----

가. -- 당일: -----

나. 10일 전: -----

다. 5일 전: -----

라. 1일 전: -----

2. -----, -----

-----.

가. 60일 전: -----

나. 30일 전: -----

다. 20일 전: -----

라. 10일 전: -----

3. -----

--

가. 20일 전: -----

나. 15일 전: -----

다. 10일 전: -----

라. 5일 전: -----

마. 1일 전: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60일전 : 10분의 7
2. 30일전 : 10분의 5
3. 20일전 : 10분의 3
4. 10일전 : 10분의 1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뚜렷한 위해발생시
2. (생략)

<신 설>

-----.

1. 60일 전: -----
2. 30일 전: -----
3. 20일 전: -----
4. 10일 전: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위해가 발생할 때
2.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해서는 2026. 1. 1.부터 제9조 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장기복무 세대군인 감면을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관련내용
1	제9조(입장료)	입장료 50%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
2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개인연습사용료 30%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50% 감면**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안 제9조)
-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30% 감면**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안 제10조제1호다목)

나. 전제

- (감면대상) 서울시 거주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총 10,000명으로 전제하며 이를 활용해 전체 내국인 시민 대비 비율을 0.10%¹⁾로 산정
 - 서울시 거주 장기복무제대군인 수는 추계기간 내 동일한 수를 전제하여 추계
- (수 입 액) 2024년도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입 기준으로 추계
- (발생기간)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
 - ※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라. 방법 : 각 시설 관리기관별 제출자료 활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	-	-	-	-	-
	소계(a)	-	-	-	-	-	-
수입	입장료 세입감소	△50	△50	△50	△50	△50	△250
	개인연습사용료 세입감소	△146	△146	△146	△146	△146	△730
	소계(b)	△196	△196	△196	△196	△196	△980
□ 총 비용(a-b)		△196	△196	△196	△196	△196	△98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주무관 방준흠(02-2133-2678)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50% 감면**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안 제9조)
-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30% 감면**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안 제10조제1호다목)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980천원**(연평균 196천원)

$$- \text{산출방식} = \sum_{i=1}^5 (\text{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면에 따른 연평균 세입감소액})_i$$

$i = \text{비용추계 연차}(2025\text{년} \sim 2029\text{년})$

나.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면에 따른 연평균 세입감소액= **196천원**

= 입장료 연평균 수입감소액 + 개인연습사용료 연평균 수입감소액

= 50천원 + 146천원

※ 시설별 세부추계 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구분	2024년 수입액	장기복무 제대군인비율	감면비율	수입감소예상액
합계	합계	584,842			196
	입장료	99,875	0.10%	50%	50
	개인연습사용료	484,967	0.10%	30%	146
잠실종합 운동장	소계	382,551			122
	입장료	33,858	0.10%	50%	17
	개인연습사용료	348,693	0.10%	30%	105
목동종합 운동장	소계	26,675			11
	입장료	16,567	0.10%	50%	8
	개인연습사용료	10,108	0.10%	30%	3
서울월드컵 경기장	소계	24,050			12
	입장료	24,050	0.10%	50%	12
	개인연습사용료	-	0.10%	30%	0
고척 스카이돔	소계	126,166			38
	입장료	-	0.10%	50%	0
	개인연습사용료	126,166	0.10%	30%	38
장충 체육관	소계	25,400			12
	입장료	25,400	0.10%	50%	12
	개인연습사용료	-	0.10%	30%	0

※ 입장료 · 개인연습사용료가 없는 2개 시설(구의 · 신월야구장) 및 자립형 민간위탁시설 2개소(효창운동장 · 산악문화체육센터)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 잠실 · 목동종합운동장은 실내체육관 · 풋살구장 · 보조경기장 등 내부시설 포함하여 산정

1) 서울시 내국인 등록인원 현황 9,729,107명(' 25.2월 기준) / 서울 거주 장기복무제대군인 규모는 국방 관련 사항이므로 10,000명으로 추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의9 신설)

- 사업 예산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
- 자치구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나. 그 밖의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의견내용: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위법·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등의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처리 조항 마련 필요

- 반영사항: 사업 실행 방침 수립 시 지원금 환수 등 내용을 포함하며, 지원금 지급 시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수하는 방안을 시스템에 구현 예정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준열 (☎ 2133-5025)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를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로, “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를 “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7제1항 중 “시에”를 “서울특별시에”로, “자가”를 “사람이”로, “서울시”를 각각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9(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① 시장은 결혼·살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시”를 “서울특별시”로,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9의 신설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1인 자영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제2조(정의) ----- ----- 뜻은 -----. 1. ~ 8. (현행과 같음) 9. ----- -----.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 ----- ----- -----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생 략)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①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 ③ (생 략)

④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

마. (현행과 같음)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하
다)

3. (생 략)

⑤ 시장은 출생축하용품을 지원
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생축하용
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
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
생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
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⑥ ~ ⑧ (생 략)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
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
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
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
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
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
다.

② (생 략)

<신 설>

--

3. (현행과 같음)

⑤ -----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
면) ① -----
----- 서울특별
시에 ----- 사람이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9(신혼부부 결혼·살림비

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
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
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신설>

용 지원) ① 시장은 결혼·살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결혼·
살림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
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 서울특별시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
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9의 신
설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적
용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9 제1항에 ‘신혼부부’에 대하여 ‘결혼·살림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 상 : 서울시 거주 19~49세 신혼부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지 급 액 : 1가구당 100만원 실비 지급 (결혼·살림 비용 관련 영수증 증빙)
※ 혼인신고 6개월 전 및 신고 후 구매영수증
- 추계기간 : 혼인신고 1년 이내

3. 비용추계의 결과 :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100,645,000
	소계(a)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100,645,000
수입	○ 없음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 총 비용(a-b)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100,645,000

4. 재원조달 방안 : 시 예산편성액으로 조달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100,645,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20,129,000	100,645,000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준열 (☎2133-5025)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시행기간: 비용은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사업개시 시점부터 발생 예정
-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 :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최대 100만원** 환급 지원
 - 지원항목

- 결혼준비 : 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앨범제작, 청첩장 등 (※ 스프레, 공공예식장 미포함)
- 혼인살림 : 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

○ 지원 대상 가구수 계산

- 2023년 만19~49세 서울시 거주자 혼인건수 : 33,548건

-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비율 : 77.3%*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작성방법 및 의의

- 중위소득 150% 이하(연소득 약 7천만원) 신혼부부 비율 : 56.2%

※ 2023년 전국 초혼 신혼부부 769,067쌍 중 소득 7천만원 미만 신혼부부는 432,031명으로 56.2%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했을때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77.3%,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를 고려했을때 56.2%이나, 서울시 인구대비 청년비율·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를 전체 가구 중 약 60% 비율로 설정
- $33,548\text{건} \times 60\% = \text{약 } 20,129\text{건}$

○ 비용추계 산식

- 신혼부부 1가구당 최대 100만원 $\times$ 20,129가구 = 20,129,000,000원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실내에 한해 운영하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실외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신설하며, 현행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료 감면기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다른 어린이 놀이기구시설과 본 조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실내외를 불문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 나.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변경 표기(안 제7조의2)
- 다. 민간 키즈카페의 지원범위 대상의 명확화 및 중복개념 삭제(안 제7조의3)
- 라.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 대상을 실제 이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인 아동을 중심으로 표기되도록 변경(안 별표)
- 마. 그 밖의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기구시설 안전관리법」 등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3. 5. ~ 3.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정 (☎2133-480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형 키즈카페”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에 대하여”를 “중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대 상	감면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입장료 전액 감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바. 그 밖에 <u>시장이</u> 인정하는 아동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u>서울특별시장이</u> <u>하 “시장”이라 한다</u>)----- ---
<신설>	5. “ <u>서울형 키즈카페</u> ”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u>시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u>
제4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u>시장</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u>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u>) ① 시장은 아동	제7조의2(<u>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u>) ① -----

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기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 설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 등에 대한 인증서 교부

2. ~ 4. (생략)

----- 서울형 키즈카페 -----
-----.

② ----- 서울형 키즈카페 -----
-----.

③ -----
----- 별표와 -----
--.

④ ----- 서울형 키즈카페 -----

-----.

제7조의3(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 설 등의 지원) ① -----
----- 중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 -----
-----.

<삭 제>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③ (생 략)

[별표 1]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대 상	감면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전액 감면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둥이 행복카드" 를 소지한 가족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대 상	감면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원	임장료 전액 감면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둥이 행복카드" 를 소지한 가족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주로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정 (☎2133-4803)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시 권역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및 설치 주체 전환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 설치 규정에서 권역별 설치 삭제(안 제4조)
- 나. 심리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 추가(안 제5조)
- 다. 조직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권역별 규정 삭제(안 제6조)
- 라. 센터 설치 관련 사업비 지원근거 신설(안 제8조)
- 마. 그 밖의 문구 및 약칭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개선의견: 심리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
 - 반영사항: 반영완료(안 제5조제7호 신설)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미경(☎2133-784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을 “공공” 으로, “위하여” 를 “위한” 으로, “규정함” 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시” 를 “서울특별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차상위 계층” 을 “차상위계층”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센터의 설치”) 를 “(센터의 설치·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요기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추구 실현을 위해” 를 “주요 업무 및 기능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인별·집단별” 을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평가에 관한 사항
6.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8.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서 정하는” 을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로,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 을 “시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심리지원센터의” 를 각각 “센터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을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으로, “범위 내” 를

“범위”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심리지원센터”를 “자치구별 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리지원센터의”를 “시장은 센터의”로, “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에”를 “위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u>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공 ----- ----- ----- ----- 위한 ----- ----- --- <u>규정</u> 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u>심리지원센터</u> ”(이하 “ <u>센터</u> ”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u>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u>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u>심리지원센터</u> ”(이하 “ <u>센터</u> ”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u>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u> 시키도록 돕는 <u>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u>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u>서울시</u> 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u>시장</u> 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u>차상위 계층</u>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	제3조(적용대상) ① ----- ----- <u>서울특별시</u> ----- -----. ② <u>서울특별시</u> 시장(이하 “ <u>시장</u> ”이라 한다)----- ----- <u>차상위계층</u> ----- ----- -----

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 추구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 주요 업무 및 기능은 -----

-----.

1.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
2. ~ 4. (현행과 같음)
5.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평가에 관한 사항
6.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

<신 설>

5. (생 략)

제6조(센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2. (생 략)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에 관한 사항

8.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센터 조직 등) <삭 제>

----- 제5조에 따른 기능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

--- 시장-----
-----.

1.·2. (현행과 같음)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
-- 센터의 -----
----- 센터의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 범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
 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 심
 리지원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
 를 둘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수탁
기관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소
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
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
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자치
구청장이 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

 ----- 위해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사무의 위임) ① -----
 ----- 자치구별 센터 -----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
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운영
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
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

제11조 (생 략)

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자치구 심리지원센터(마음상담소) 설치비 지원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3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0	520,000	260,000	-	-	2,080,000
	소계(a)	1,300,000	520,000	260,000	-	-	2,08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300,000	520,000	260,000	-	-	2,08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1,300,000	520,000	260,000	-	-	2,080,000
	세외수입	-	-	-	-	-	0
	지방채 등	-	-	-	-	-	0
민간		-	-	-	-	-	0
기타		-	-	-	-	-	0
합계		1,300,000	520,000	260,000	-	-	2,080,000

5. 덧붙이는 의견

- － 설치목표 : ’ 25년 10개소, ’ 26년 4개소, ’ 27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 27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6. 작성자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미경(2133-784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지출	○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0	520,000	260,000
	설치비	1,300,000	520,000	260,000
	소계	1,300,000	520,000	260,000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자살예방 교육 개정사항 반영으로 조례 실효성 강화
- 나. 자살예방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 전문개정(안 제8조, 제9조)
- 나. 자살예방법 개정사항 ‘자살예방 교육’ 신설(안 제20조의2)
- 다. 시행일 및 자살예방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안 부칙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 개선의견: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
 - － 반영사항: 반영완료(안 제9조제2항)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적정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이가희(☎ 2133-783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한”을 “위해”로, “수립·시행함으로써”를 “수립·시행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을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동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권역별”을 “체계적인”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맡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은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2호가목에서 사목까지의 분야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가. 시민건강국장
- 나. 안전 관련 실·국·본부장

2. 위촉직

-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나.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의 장
- 다.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과장이 맡고 서기는 자살예방팀장이 맡는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을 “자살시도자등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을 “자살자·자살시도자등”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자살예방 교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에 대한 존속기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위해 - ----- 수립·시행하 여 ----- ----- -----.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자살예방 및 생 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 ----- -----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 ·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동 기를 -----
4. ~ 13.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	③ ----- 각 호----- ----- 제

역별 자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한다.

④·⑤ (생 략)

제8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시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적인 -----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시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되고, 해당 안전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맡으며,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의 장

3.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6.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한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살예방사업 관련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2호가목에서 사목까지의 분야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가. 시민건강국장

나. 안전 관련 실·국·본부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의 장

다.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과장이 맡고 서기는 자살예방팀장이 맡는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등에
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시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5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① ---- 자살시도자등을 위
해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자살자·자살시도자등 --

-----.

제20조의2(자살예방 교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
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
회에 대한 존속기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
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
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교육 관련한 자살예방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이가희 (☎ 2133-7838)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소멸로 인해 표현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삭제, 연관 조문 현행화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나.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20조제3항제2호)

다. 법규 관계를 고려한 인용 방식 간소화(안 제2조, 제4조, 제6~7조)

라. 위원의 해촉 조문 현행화 (안 제23조)

마.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7조, 제28조,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일부반영)

－ 의견내용: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 공무원 의제 및 이의제기 규정 신설

－ 반영사항: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안 제22조제1항), 이외에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미반영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반영)

－ 의견내용: 위원회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반영사항: 성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20조제1항)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8. 8. ~ 8. 2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금재 (☎2133-768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를 “「환경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와”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를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라”로,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를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를 “시의 환경계획 수립 시”로,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또는 제12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를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24조” 를 “법 제24조”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4조” 를 “제28조” 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를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리계획” 을 “계획”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성한다” 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 를 “위촉한다.” 로, 같은 항 제1호 중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을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 을 “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1명” 을 “간사 1명” 으로,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를 “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 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을 “계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 를 “제16조” 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4조의2” 를 “법 제24조의3”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제3항” 을 “제29조제3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환경보건법</u>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u>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환경보건법</u> 」 및 「 <u>화학물질관리법</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u>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리”란 시민이 <u>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u>
1. “ <u>환경보건</u> ”이란 「 <u>환경보건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u>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u>	
2. “ <u>환경성질환</u> ”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	

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

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환경보건법」, 「화학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물질관리법」 및 그 밖의 환경
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
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사업자는 환경오염 및 화학
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
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
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
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
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
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
다)와 -----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

----- “종합
계획”-----

-----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 ~ ⑧ (생략)

⑨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따라 -----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 시의 환경계획 수립 시 -----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

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이 실시하는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⑥ ----- 제1항 -----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 -----

-----.

⑦ ----- 제1항 -----

-----.

⑧ ----- 제1항 -----

----- 제1항 -----

-----.

1. ~ 3. (생 략)

⑨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 사업자는 제외한다) 시장이 제1항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원을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

1. ~ 3. (현행과 같음)

⑨ -----
----- 제1
항-----

-----.

<삭 제>

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

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의 허
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4. 시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
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
요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의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원

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
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
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
에 따른다.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 법 제15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
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 법 제15조
제2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
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 ① 시장은 제24조
에서 정한 정보, 그 외의 환경유
해인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시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
적 및 기능) 시장은 환경보건정
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
장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
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
문한다.

1. 제7조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법 제24조--

-----.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 ① ---- 제28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
적 및 기능) -----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제12조 청원에 관한 사항

4. ~ 11. (생 략)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1.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
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법률 지식
을 갖춘 사람

2. 당연직 위원 :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11.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
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촉한다.

1. -----

-----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

2. ----- 시 시민건강업
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④ (현행과 같음)

⑤ -----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
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
이 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
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한 경우

제24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
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
다.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민에게 공개한다.

1. 제7조에 따른 환경보건 및 화
학물질 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간사 1명-----
----- 부
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
이 맡는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
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
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

1. ----- 계획-----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의 어린이 건강에 유 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보	3. 제16조-----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 구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 ----- ----- -----.
1.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 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 하여 법 제24조의2에 의한 자 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	1. ----- ----- -- 법 제24조의3-----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 질 관련 환경·안전교육 등을 위해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교 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 ----- --- 제29조제3항----- ----- ----- -----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무 변동사항 반영(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삭제), 시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금재 (☎ 2133-768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디지털 분야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은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서울디지털재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서울디지털재단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인공지능(AI) 관련 업무를 재단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관 명칭을 ‘서울AI재단’ 으로 변경함(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조례의 목적과 재단의 사업에 인공지능(AI) 관련 내용을 명시함(안 제1조, 안 제4조)
- 다. 약칭 용어 수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개선의견) 안 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지원 기업의 범주를 현행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소상공인, 여성기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까지 확대하여 명시할 것을 제안
 - (미반영 사유) 금번 조례 개정 취지는 기관 명칭 변경과 인공지능(AI) 관련 업무를 재단의 사업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의견은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 예정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원기철 (☎ 2133-291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첨단”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데”를 “서울AI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2조 중 “서울디지털재단”을 “서울AI재단”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첨단”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으로, “정책연구 및 컨설팅”을 “정책연구, 컨설팅, 교육, 문화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디지털”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법인”을 “재단”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출연기관, 시민 대상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제9조제3항 중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기재순”을 “기재 순”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를 “관한 자문을”로 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대하여 재단”을 “재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재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그” 를 “재단의” 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로, “소속공무원” 을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마목 중 “서울디지털재단” 을 “서울AI재단”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서울디지털재단” 을 “서울AI재단”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u> <u>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u> <u>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첨단</u>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u>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u>서울디지털재단</u>(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첨단</u>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u> <u>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인공지능</u> (AI)을 비롯한 <u>첨단</u> ----- ----- ----- ----- <u>서울AI재단을 설립·</u> <u>운영하는 데</u> ----- -----. 제2조(적용범위) ----- <u>서울AI</u> <u>재단</u>-----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 제4조(재단의 사업) ----- -----. 1. <u>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u>

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 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 지원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4. · 5. (생략)

6.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7. (생략)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이사회) ① · ② (생략)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

----- 정책연구, 컨설팅, 교육, 문화확산

2. -----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출연기관, 시민 대상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4. · 5. (현행과 같음)

6.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

7. (현행과 같음)

8. ----- 재단-----

제9조(이사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득이한 -----

--- 기재 순-----

행한다.

④ (생 략)

제10조(자문위원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3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생 략)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② (생 략)

③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문위원단) -----
----- 관한 자문을 -----

-----,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
----- 시의 -----

-----,

제13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

-----,

제14조(수익사업) -----
----- 범위 -----
-----,

제16조(사업연도) -----
--- 시 -----
-----,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
-----.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도·감독) ① -----

----- 재단의 이사장
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
무원 -----
----- 재단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공무원의 파견) -----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소속 공무원--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수행 중인 인공지능(AI) 관련 업무를 재단의 사무에 선언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행정6급 원기철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추가하고, 직제 순서에 맞게 각 호를 체계적으로 개편(안 제10조제2항제3호)
- 나. 위원회 구성 조항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위촉위원 근거 조항 추가 등 어구 수정(안 제8조, 안 제10조)
- 다. 용어 약칭 추가(안 제6조제3호, 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제2항제9호, 안 제15조)
- 라.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안 제2조, 안 제11조의2, 안 제12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채리나(☎2133 -7615)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격년단위”를 “격년 단위”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 구성”을 “조직위원회의 위원”으로, “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을 “서울총괄건축가(「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서울의”를 “시의”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을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를 “조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며, 위원장이 회의에”로, “모두”를 “모두 회의에”로,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를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은 임기를”을 “위원의 임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직위원회”를 “조직위원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정하여 운영할”을 “정할”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서울의”를 “시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를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고, 위원장이 회의에”로, “모두”를 “모두 회의에”로,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를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정하여 운영할”을 “정할”로 한다.

3. 미래공간기획관

8. 제11조의 출연기관의 장

제11조의2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출연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출연기관의 장에게”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시로” 를 “시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개최시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라 한다)를 2017년부터 <u>격년단위로 개최한다.</u>	제2조(개최시기) ----- ----- ----- ----- <u>격년 단위-----.</u>
제6조(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서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u>서울시</u> 및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관계기관 및 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4. (생략)	제6조(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 ----- 4. (현행과 같음)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u>위원 구성</u> 은 시장, 행정1·2부시장, <u>서울총괄건축가</u> 및 <u>시의원과 그 외 서울의</u>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u>한다.</u> ③ <u>위원장은</u>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2부시장 및 위원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조직위원회의 위원</u> ----- ----- <u>서울총괄건축가(「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u> 및 <u>서울특별시의회의원</u> --- <u>시의</u> --- <u>구성한다.</u> ③ <u>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u> ----- -----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조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

----- 모두 회의에 -----
---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

⑤ ----- 위원의 임기는 -----

⑥ 조직위원회 회의-----

--.

⑦ ----- 필요한 정할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 위원-----

--.

1. · 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7. 서울시의원 2명

8.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9. 서울의 건축, 도시,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생 략)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⑤ · ⑥ (생 략)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1. · 2. (현행과 같음)

3. 미래공간기획관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8. 제11조의 출연기관의 장

9. 시의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고, 위원장이 회의에 -----
모두 회의에 -----
-----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필요한
정할 -----.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
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
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
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별
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기관은 출연금에
대하여는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
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③ (생략)

제14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
은 필요한 경우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
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기
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
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
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 필요한 -----
-----.

제12조(출연금 등) ① -----

----- 별
위-----
---. 이 경우 출연기관은 교부
받은 출연금을 서울비엔날레 업
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 및 감독 등) ① ----
----- 경우 출연기관의 장에
게 -----
----- 소속 공무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

----- 시로 -----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업무 이관에 따른 당연직 운영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채리나(2133-761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간판에 사용되는 색채로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항4호)
- 나. 입간판 재료를 '비철(非鐵) 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변경 (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 다. 공공시설물 광고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 단서 조항(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삭제(안 제10조제1항제2호)
- 라.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선착장' 추가 (안 제10조제1항제6호)
- 마. 조례 위임 사항이 아닌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조항 삭제(안 제11조의2)
- 바. 창문을 이용한 전광류(동영상 변화가 없는) 사용 광고물을 '상업지역 건물 1층'으로 제한한 규정 삭제(안 제17조제2항2호)
- 사.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기준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 조항 추가(안 제17조제4항)
- 아. 그 밖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2조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제6호) 및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 의견있음(미반영)
 - ※ 의견내용 : 가로영상문화시설 설치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상업용 미디어폴과 같은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높고 빛공해,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이 예상됨(제10조1항2호 관련)

※ 미반영 사유 :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및 설치·디자인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작성자: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이제인 (☎ 02-2133-193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8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제17조제2항제2호”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시에”를 “종료 시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단서 중 “디지털 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립형 간판”을 “연립형간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 중 “비철(非鐵)금속”을 “금속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을 “가로영상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1의 공원이용시설 중 제1호가목 내 선착장(「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리버버스를 위한 선착장에 한정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호”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호”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제11조제1항제3호”를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 건물”을 “건물”로,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을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또는 자치구 등으로부터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건물의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 이용 간판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규격은 세로는 4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가로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 및 ----- ----- <u>시행령</u> ----- ----- ----- -----.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에 따른 공연간판	4. 제7조-----

5. ~ 10. (생 략)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생 략)

나.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5. ~ 10. (현행과 같음)

③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제17
조-----

2. (현행과 같음)

3. -----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
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
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
업지역에 한정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
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
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5. (생 략)

④ · ⑤ (생 략)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
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
다.

종료 시에-----
-----,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
법) ① -----

-----.

1. ~ 6. (생략)

7. 간판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8.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간판 게시시설의 세로길이는 제
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
물의 5층 이하에서 구청장이 따

1. ~ 6. (현행과 같음)

7.

.

디지털광고물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립형

간판 -----

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 금속을 말한다.

②·③ (생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횡단보도 쉼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3. ~ 5. (생략)

-----,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
----- 금속 등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로영상문화시설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 략)

②·③ (생 략)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

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1의 공원이용시설 중 제1호가목 내 선착장(「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리버버스를 위한 선착장에 한정한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

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제11조의3(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3(집회현수막)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호 -----
 -----.

1. · 2. (생 략)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 관리기준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
야 한다.

1. ~ 5. (생 략)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
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
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① (생 략)

②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 디
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 설치
하여 건물 · 시설물 · 점포 · 영
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
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 관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11조제1항제4호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1. 건물-----

--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각 -----

-----.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또는 자치구 등으로부터 창문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건물의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 이용 간판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규격은 세로는 4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가로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선착장’ 추가
(안 제10조제1항제6호)
-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기준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 조항 추가 (안 제17조제5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선착장’을 추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대상 및 지원범위가 명확치 않아 재정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
- 창문 이용 광고물의 시범사업은 시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이제인(2133-193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관리 운용 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도시계획과장’ 에서 ‘도시공간전략과장’ 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계획과장’ 에서 ‘도시공간전략과장’ 으로 변경함(안 제9조)

다. 그 밖의 제목 및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박미라 (☎ 2133-695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 를 “(기금의 설치)” 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과장” 을 “도시공간전략과장” 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관리” 를 “관리·운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를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과장” 을 “도시공간전략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1월 13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관리·운용-----

-----.

1. ~ 3. (현행과 같음)

4. -----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시공간전략과장-----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 례) 2024년 11월 13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 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7조제1 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 이후 운영되 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 설치·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박미라(02-2133-6956)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혼잡통행료 징수 방법이 양방향 징수에서 도심방향만 징수로 변경된 이후 혼잡통행료 징수소 주변 거주민의 필수통행(생활도로) 보장을 위하여 거주민 소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감경 신설 등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경형 승용 자동차 혼잡통행료 감경(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조례에 명시(신설) (안 제6조제2항제1호)
- 나.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개인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혼잡통행료 감경(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신설 (안 제6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1. 23. ~ 2. 12.)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교통실 교통정책과 박진희(☎ 2133-222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07:00~21:00시” 를 “07:00~21:00” 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9호 중 “별표1” 을 각각 “별표 1”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 자동차
2.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개인소유 자동차(다만, 법인소유 자동차, 임대 자동차 등 개인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 ①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는 <u>07:00 ~ 21:00</u> 시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 ① ----- <u>07:00 ~ 21:00</u>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혼잡통행료의 감면)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혼잡통행료의 감면) ①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u>별표1</u> 에 따라 경형승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	8. ----- ----- <u>별표 1</u> ----- ----- --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u>별표1</u> 에 따라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	9. ----- ----- <u>별표 1</u> ----- ----- -----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신설>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u>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
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
용 자동차

2.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개인소유 자동차(다만, 법인소
유 자동차, 임대 자동차 등 개
인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하
다)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중구 거주민 개인소유 자동차(법인, 임대자동차 제외)의 혼잡통행료 100분의 50 감면

개정안 :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개인소유 자동차(다만, 법인소유 자동차, 임대 자동차 등 개인 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개요 : 남산 1,3호 터널 통과시 2인 이하 탑승 자동차, 1회당 2,000원 부과

2. 비용추계의 전제

- － 분석 : 남산 1,3호 터널 통행량중 징수차량 거주지별 분석

(단위 : 대)

구분	합계	서울				경기	인천	기타 (수도권 외)
		소계	중구	용산	기타			
통행량 (' 24.6월 기준)	251,433 (100%)	110,990 (44.1%)	8,586 (3.4%)	6,406 (2.5%)	95,998 (38.2%)	54,247 (21.6%)	22,576 (9.0%)	63,620 (25.3%)

－ 8,586대 × 1,000원 × 12개월 = 103,032,000원

※ 중구 거주지 차량중 경형자동차(1,000원), 법인 및 임대 자동차도 있을 수 있어, 세입 감소율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수입	혼잡통행료	60,102	103,032	103,032	103,032	103,032	472,230

※ 시행예정일 : 2025.6.1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교통실 교통정책과 박진희(☎ 2133-2223)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0건으로 취득 7건, 처분 3건임

- 취득 7건은 증축 1건, 현물출자(권리취득) 2건, 무상귀속 및 신축 변경 1건, 신축 취소 3건이며,
- 처분 3건은 현물출자 2건과 멸실 1건임

나. 취득 7건

- 증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남미 맹수 재규어 한 쌍을 도입하기 위한 방사장 공간을 조성하고자 기존 건축물 한 동을 수평 증축(337.60㎡)
- 현물출자(권리취득)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을 위해 영등포구 당산 공영주차장 부지인 시유지(7,127.30㎡)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함에 따른 권리(금액 43,868백만원) 취득
 -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인 시유지(15,067.00㎡)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함에 따른 권리(금액 42,248백만원)취득
- 무상귀속 및 신축 변경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당초 서울시 공공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망원 배수구역 침수 해소를 위한 빗물펌프장 등을 신축하고 새로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 매입 대상 국유지가 무상귀속으로 변경되고, 물가상승 및 임대주택 혁신방안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39.8% 증가(54,262백만원 → 75,900백만원)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 신축 취소 3건에 대한 세부내역

- 당초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신봉터널 상부 유희부지(신림동 1569-20 일대)를 활용하여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을 신축(24,669.60㎡)하고자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선행 공정인 터널공사(신림~봉천터널) 지연에 따른 사업 장기화 및 사업비 증가 우려, 구조 안정성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
- 당초 서울시 공공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택지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주택공급지의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강동구 강일차고지를 현대화하고 공공주택을 복합 신축(106,381.93㎡)하고자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사업반대 의견(지역주민, 버스업체, 강동구) 및 시범사업(장지 공영차고지) 우선 추진 결정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
- 당초 물산업 우수기술 육성 및 제품 개발을 위해 물재생센터 가용 부지를 활용하여 기업 등에 연구 및 실증공간을 제공하고자 물산업 미니클러스터를 조성(1,855.00㎡)하는 것으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증가(연면적 대비 공사비 약 2.5배 증가)한 사유로 사업보류 후 재추진시 건축물 건립은 제외함에 따라 신축 취소

다. 처분 3건

○ 현물출자 2건, 멸실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을 위해 영등포구 당산 공영주차장 부지인 시유지(당산동3가 2-1/4, 7,127.30㎡)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내 건물(10,988.29㎡)을 멸실하고, 사업부지인 시유지(시흥동 산 139-2, 15,067.00㎡)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7건

- | | | | |
|----------------|----|---|-----------------------------|
| - 증축 | 1건 | : | 건물 337.60㎡ |
| - 현물출자(권리취득) | 2건 | : | 금액 86,116백만원 |
| - 무상귀속 및 신축 변경 | 1건 | : | 토지 359.00㎡
건물 10,924.32㎡ |
| - 신축 취소 | 3건 | : | 건물 132,906.53㎡ |

○ 처분 3건

- | | | | |
|--------|----|---|---------------|
| - 현물출자 | 2건 | : | 토지 22,194.30㎡ |
| - 멸실 | 1건 | : | 건물 10,988.29㎡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미 댐수 재규어 한 쌍을 도입하기 위한 방사장 공간을 조성하고자 기존 건축물 한 동을 수평 증축(337.60㎡) 하고,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을 위해 영등포구 당산 공영주차장 부지인 시유지(7,127.30㎡)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함에 따른 권리(금액 43,868백만원)를 취득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67.00㎡)인 시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함에 따른 권리(금액 42,248백만원)를 취득하고,

당초 서울시 공공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망원 배수구역 침수 해소를 위한 빗물펌프장 등을 신축하고 새로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매입 대상 국유지가 무상귀속으로 변경되고, 물가상승 및 임대주택 혁신방안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39.8% 증가(54,262백만원 → 75,900백만원)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당초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신봉터널 상부 유희부지(신림동 1569-20 일대)를 활용하여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을 신축(24,669.60㎡)하고자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선행 공정인 터널공사(신림~봉천터널) 지연에 따른 사업 장기화 및 사업비 증가 우려, 구조 안정성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하고,

당초 서울시 공공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택지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주택공급지의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강동구 강일차고지를 현대화하고 공공주택을 복합 신축(106,381.93㎡)하고자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사업반대 의견(지역주민, 버스업체, 강동구) 및 시범사업(장지 공영차고지) 우선 추진 결정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 하고,

당초 물산업 우수기술 육성 및 제품 개발을 위해 물재생센터 가용 부지를 활용하여 기업 등에 연구 및 실증공간을 제공하고자 물산업 미니클러스터를 조성(1,855.00㎡)하는 건으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증가(연면적 대비 공사비 약 2.5배 증가)한 사유로 사업보류 후 재추진시 건축물 건립은 제외함에 따라 신축 취소하고,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을 위해 영등포구 당산 공영주차장 부지인 시유지(당산동3가 2-1/4, 7,127.30㎡)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내 건물(10,988.29㎡)을 멸실하고, 사업부지인 시유지(시흥동 산 139-2, 15,067.00㎡)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별첨)

○ 취득 7건

- | | | | |
|----------------|----|---|-----------------------------|
| - 증축 | 1건 | : | 건물 337.60㎡ |
| - 현물출자(권리취득) | 2건 | : | 금액 86,116백만원 |
| - 무상귀속 및 신축 변경 | 1건 | : | 토지 359.00㎡
건물 10,924.32㎡ |
| - 신축 취소 | 3건 | : | 건물 132,906.53㎡ |

○ 처분 3건

- | | | | | |
|---|------|----|---|---------------|
| - | 현물출자 | 2건 | : | 토지 22,194.30㎡ |
| - | 별실 | 1건 | : | 건물 10,988.29㎡ |

첨 부

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구분		이전			금회			합계			
		건수	면적(㎡)	금액(천원)	건수	면적(㎡)	금액(천원)	건수	면적(㎡)	금액(천원)	
취득	계	토지	2	29,199.27	114,431,869	1	359.00	607,751	3	29,558.27	115,039,610
		건물	14	137,600.13	900,434,873	4	144,168.45	295,742,141	18	281,768.58	1,196,177,014
		기타	1	-	9,300,000	2	-	86,116,400	3	-	95,416,400
	매입 및 신축	토지	-	16,981.60	87,366,157	-	-	-	-	16,981.60	87,366,157
		건물	2	34,807.30	185,307,000	-	-	-	2	34,807.30	185,307,000
		건물 등	6	12,549.00	77,709,267	-	-	-	6	12,549.00	77,709,267
	기부채납	토지	1	122.97	1,153,705	-	-	-	1	122.97	1,153,705
		건물 등	1	14,178.95	76,855,209	-	-	-	1	14,178.95	76,855,209
		건물 등	2	24,441.98	384,699,041	1	337.60	2,003,729	3	24,779.58	386,702,770
	매입	신박	1	-	9,300,000	-	-	-	1	-	9,300,000
		신축(취소)	2	47,181.90	153,070,000	3	132,906.53	217,838,412	5	180,088.43	370,908,412
		현물출자	-	-	-	2	-	86,116,400	2	-	86,116,400
	무상귀속 및 신축	토지	-	-	-	1	359.00	607,751	1	359.00	607,751
		건물	-	-	-	-	10,924.32	75,900,000	-	10,924.32	75,900,000
		토지	1	8,975.00	1,915,265	-	-	-	1	8,975.00	1,915,265
교환	토지	-	3,119.70	23,996,732	-	-	-	-	3,119.70	23,996,732	
	건물	1	4,441.00	22,794,356	-	-	-	1	4,441.00	22,794,356	
	토지	2	51,300.20	292,125,922	2	22,194.30	86,116,400	4	73,494.50	378,242,322	
계	건물	-	29,477.11	8,710,127	1	10,988.29	3,567,467	1	40,465.40	12,277,594	
	공작물	1	3,314.41	3,019,599	-	-	-	1	3,314.41	3,019,599	
	토지	-	-	-	2	22,194.30	86,116,400	2	22,194.30	86,116,400	
현물출자	토지	1	3,300.20	15,213,922	-	-	-	1	3,300.20	15,213,922	
	건물	-	-	-	-	-	-	-	-	-	
	토지	1	48,000.00	276,912,000	-	-	-	1	48,000.00	276,912,000	
매각 및 멸실	건물	-	29,477.11	8,710,127	-	-	-	-	29,477.11	8,710,127	
	건물	-	-	-	1	10,988.29	3,567,467	1	10,988.29	3,567,467	
	공작물	1	3,314.41	3,019,599	-	-	-	1	3,314.41	3,019,599	
처분	계	토지	-	-	-	-	-	-	-	-	
		토지	1	3,300.20	15,213,922	-	-	-	1	3,300.20	15,213,922
		건물	-	-	-	-	-	-	-	-	-
매각 및 멸실	토지	1	48,000.00	276,912,000	-	-	-	1	48,000.00	276,912,000	
	건물	-	29,477.11	8,710,127	-	-	-	-	29,477.11	8,710,127	
	건물	-	-	-	1	10,988.29	3,567,467	1	10,988.29	3,567,467	
멸실	계	건물	1	3,314.41	3,019,599	-	-	-	1	3,314.41	3,019,599
		공작물	1	3,314.41	3,019,599	-	-	-	1	3,314.41	3,019,599
		토지	-	-	-	-	-	-	-	-	-

2.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25년도 제2차 수시분)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	동	번지	계					
1	건물 증축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872		144,527.45	382,466,292			
2	현물출자 (관리취득)	-	-	-		337.60	2,003,729	2027	서울대공원 남미관 방사장 건축물 증축	서울대공원 (공물기획과)
3	현물출자 (관리취득)	-	-	-		-	43,868,532	2026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홀 (당산동) 조성	아이돌봄담당관
4	토지 무상 귀속	-	-	-		-	42,247,868	2026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조성	
5	토지 무상 귀속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대		359.00	607,751	2027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	공공주택과
6	건물 신축 (변경)					10,924.32	75,900,000			
7	건물 신축 (취소)	관악구	신림동	1569-20 일대		24,669.60	51,409,000	-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 취소	공공주택과
8	건물 신축 (취소)	강동구	강일동	682 일원		106,381.93	163,773,922	-	강일차고지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취소	
9	건물 신축 (취소)	강서구	마곡동	105 일대		1,855.00	2,655,490	-	물신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취소	물재생사업과

3.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25년도 제2차 수시분)

입원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처분 시기	처분사유	소관부서
		구	동	번지					
계									
1	현물출자 (토지)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4	7,127.30	43,888,532	2026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홀 (당산 공영주택상 부지) 조성	아이돌봄담당관
2	현물출자 (토지)	금천구	시흥동	산 139-2	15,067.00	42,247,868	2026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조성	
3	건물 멸실				10,988.29	3,567,467	2026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요약(' 25년도 제2차 수시분)

사업명	구분	내역			세부내용
		종류	건수	(여)면적 (㎡)	기준가격 (천원)
서울대공원 남미관 방사성 건축물 증축	취득 (건축)	건물	1	337.60	2,003,729
					- 목적 및 용도 : 멸종 위기종인 재규어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기준 건축물을 증축 - 대 상 지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872 - 사업기간 : ' 24. 3월 ~ ' 27. 12월 - 소요예산 : 3,987,071천원 - 사업규모 : 건물 337.60㎡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2,003,729천원 - 계약방법 : <건물 증축> 공개경쟁입찰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출 (당산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	취득 (현물출자)	관리	1	-	43,868,532
	처분 (현물출자)	토지	2	7,127.30	43,868,532
					- 목적 및 용도 : 양육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자 중심의 새로운 주택 모델 공급을 위한 현물출자 - 대 상 지 :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 4 - 사업기간 : '22. 8월 ~ '26. 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 사업규모 : 토지 7,127.30㎡ - 기준가격 명세 : (취득) 관리취득 43,868,532천원 (처분) 토지 43,868,532천원 - 계약방법 : <현물출자 및 관리취득> 수의계약(김정영가 후 SH공사에 출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출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조성	취득 (현물출자)	관리	1	-	42,247,868
					- 목적 및 용도 : 양육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자 중심의 새로운 주택 모델 공급을 위한 현물출자 및 기존건물 멸실 - 대 상 지 : 금천구 시흥동 산 139-2 - 사업기간 : ' 23. 12월 ~ ' 26. 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 사업규모 : <토지> 15,067.00㎡, <건물> 10,988.29㎡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42,247,868천원, <건물> 3,567,467천원

사업명	구분	내역			세부내용
		종류	건수	(연)면적 (㎡)	기준가격 (천원)
	처분 (현물출자)	토지	1	15,067.00	42,247,868
	차분 (별건)	건물	6	10,988.29	3,567,467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	취득 비용 (무상귀속 및 신축)	토지	7	359.00	607,751
		건물	1	10,924.32	75,900,000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	취득 비용 (신축)	토지	1	24,669.60	51,409,000
		건물	1	24,669.60	51,409,000

- 계약방법 :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 수익계약(경쟁가 후 SH공사에 출자)
〈건물 명실〉 SH공사 직접 명실

- 목적 및 용도 :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확충 및
명실 배수구역을 위한 외물담보강 복합화 사업
- 대 상 지 :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대
- 사업기간 : '19. 1월 ~ '27. 3월
- 소요예산 : 75,900,000천원
- 사업규모 : 토지 359.00㎡, 건물 10,924.32㎡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607,751천원, 건물 75,900,000천원
- 계약방법 : 〈토지〉 무상귀속
〈건물 신축〉 설계공모(설계), 공개경쟁입찰(시공)

- 목적 및 용도 :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 취소
- 대 상 지 : 관악구 신림동 1369-20 일대
- 사업기간 : '19. 1월 ~ '26. 12월
- 소요예산 : 51,409,00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24,669.60㎡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51,409,000천원
- 계약방법 : 〈건물신축-취소〉

사업명	구분	내역				세부내용
		종류	건수	(연)면적 (㎡)	기준가격 (천원)	
강일차고지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취소	취소 (신축)	건물	1	106,381.93	163,773,922	- 목적 및 용도 : 강일차고지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취소 - 대 상 지 : 강동구 강일동 682 일원 - 사업기간 : '19. 5월 ~ '24. 7월 - 소요예산 : 163,773,922천원 - 사업규모 : 건물 106,381.93㎡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163,773,922천원 - 계약방법 : <건물건축-취소>
물신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취소	취소 (신축)	건물	2	1,855.00	2,655,490	- 목적 및 용도 : 물신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취소 - 대 상 지 : 강서구 마곡동 105 일대 - 사업기간 : '21. 4월 ~ '22. 5월 - 소요예산 : 2,655,49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1,855.00㎡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2,655,490천원 - 계약방법 : <건물건축-취소>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조성 및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 올바른 노동환경 인식과 노동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지속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 나. 기존 1층 시민전시장을 카페테리아로 탈바꿈하여 시민 친화적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노동복합시설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 다. 공모를 통한 전문기관 제3자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3자 재위탁 대상면적 : 204.54㎡(노동복합시설 1층)
-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온비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제17조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⑧ “재단”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17조(사용료 등) ① “재단”은 제5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 수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수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3자를 수탁재산에 입주하게 하거나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수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작성자 :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이상섭(☎2133-5428)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내 정원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상생협력 구현
- 나.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 25년 정원행사 관련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 1개소씩 조성
- 나. 조성 이후 유지관리 등은 행사주관 지자체에서 시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 25년도 추경예산(300백만원) 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작성자 : 정원도시국 조경과 장재원(☎2133-2111)

붙임 1

비용추계서

(앞 쪽)

서울시-부산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 24.8월에 체결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정원문화 활성화 공동협력의 일환으로 2025년 양 도시에서 개최되는 정원관련 행사장 내 상호 우호교류 정원 조성을 위한 재정 수반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 1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서울정원 조성	300,000	-	-	-	-	300,000
	소계(a)	300,000	-	-	-	-	30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00,000	-	-	-	-	300,000

※ 부산시에서 보라매공원에 부산정원 조성 예정(300백만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자체재원	300,000	-	-	-	-	300,000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합계	300,000	-	-	-	-	300,000

5. 덧붙이는 의견

- 본 비용추계는 서울시 조경분야 사업대상지 조사지침 등을 적용하여 작성함
- 추후 사업추진 시 계획안에 따라 상세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6. 작성자

- 담당과장 : 조경과장 유혜미(☎2133-2100)
- 담당팀장 : 조경협력팀장 김승렬(☎2133-2107)
- 담 당 자 : 장재원(☎2133-211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산출식	금액(원)	비고
합계		300,000,000	
설계	22,000,000원 × 1식	22,000,000	
정원조성	278,000,000원 × 1식	278,000,000	
식재기반조성	30,000원 × 360㎡	10,800,000	
교목	400,000원 × 30주	12,000,000	
아교목	250,000원 × 60주	15,000,000	
관목	7,000원 × 6,000주	42,000,000	
초화	7,000원 × 10,000본	70,000,000	
경계석	50,000원 × 150m	7,500,000	
의자	500,000원 × 10개	5,000,000	
포장	68,000원 × 140㎡	9,520,000	
데크	250,000원 × 30㎡	7,500,000	
정원안내판	2,500,000원 × 2개	5,000,000	

수목표찰	10,000원 × 50개	500,000	
앞음벽	400,000원 × 30m	12,000,000	
상징물	20,000,000원 × 1개	20,000,000	
파고라	15,000,000원 × 2개	30,000,000	
경관조명	20,000,000원 × 1식	20,000,000	
기타	11,180,000원 × 1식	11,180,000	수목이식, 철거, 가림막헨스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2

협약서(안)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이하 “양 도시”라 한다)는 2024년 8월 23일자로 체결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도시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5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2025부산가든쇼’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
2. 부산광역시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가 담당한다.
3. 서울특별시의 부산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부산광역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

제3조(협약서의 변경)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타사항)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에 증명하고,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5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서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이하 “양 도시”라 한다)는 2024년 8월 23일자로 체결한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도시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5부산가든쇼’와 ‘2025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
2. 서울특별시의 부산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부산광역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
3. 부산광역시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가 담당한다.

제3조(협약서의 변경)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타사항)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에 증명하고,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5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내 정원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상생협력 구현
- 나.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5년 정원행사 관련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 1개소씩 조성
- 나. 조성 이후 유지관리 등은 행사주관 지자체에서 시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5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60백만원) 활용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작성자 : 정원도시국 조경과 장재원(☎2133-2111)

붙임 1

비용추계서

(앞 쪽)

서울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2025년 양 도시에서 개최되는 정원관련 행사장 내 상호 우호교류 정원 조성을 위한 재정 수반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 1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서울정원 조성	60,000	-	-	-	-	60,000
	소계(a)	60,000	-	-	-	-	6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60,000	-	-	-	-	60,000

※ 진주시에서 보라매공원에 진주정원 조성 예정(50백만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60,000	-	-	-	-	6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60,000	-	-	-	-	60,000

5. 덧붙이는 의견

- 본 비용추계는 서울시 조경분야 사업대상지 조사지침 등을 적용하여 작성함
- 추후 사업추진 시 계획안에 따라 상세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6. 작성자

- 담당과장 : 조경과장 유혜미 (☎2133-2100)
- 담당팀장 : 조경협력팀장 김승렬 (☎2133-2107)
- 담 당 자 : 장재원 (☎2133-211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산출식	금액(원)	비고
합계		60,000,000	
정원 조성	60,000,000원 × 1식	60,000,000	
식재기반조성	30,000원 × 200㎡	6,000,000	
아교목	250,000원 × 10주	2,500,000	
관목	7,000원 × 1,000주	7,000,000	
초화	7,000원 × 3,000본	21,000,000	
경계석	50,000원 × 40m	2,000,000	
의자	500,000원 × 5개	2,500,000	
포장	68,000원 × 20㎡	1,360,000	
데크	250,000원 × 10㎡	2,500,000	
정원안내판	2,500,000원 × 1개	2,500,000	
수목표찰	10,000원 × 15개	150,000	
상징물	5,000,000원 × 1개	5,000,000	
경관조명	5,000,000원 × 1식	5,000,000	
기타	2,490,000원 × 1식	2,490,000	수목이식, 철거, 가림막헬스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진주시(이하 “양 도시”라 한다)는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양 도시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5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2025 진주시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
2. 진주시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진주시가 담당한다.
3. 서울특별시의 진주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진주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

제3조(협약서의 변경)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 ①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②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양도시가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 ① 양 도시는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6조(기타사항)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에 증명하고,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5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장 오 세 훈



진주시장 조 규 일

진주시-서울특별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서

진주시와 서울특별시(이하 “양 도시”라 한다)는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양 도시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5 진주시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와 ‘2025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
2. 서울특별시의 진주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진주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
3. 진주시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진주시가 담당한다.

제3조(협약서의 변경)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 ①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②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양도시가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양 도시는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6조(기타사항)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에 증명하고,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5년 월 일



진주시장 조 규 일



서울특별시시장 오 세 훈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의 재위탁 절차 추진
- 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요양원 시설 운영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입소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시립 영보노인전문요양원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 시설규모 : 지하1~지상4층 (3,183.53㎡)
- 재위탁 예정기간 : 2026. 2. 1. ~ 2031. 1. 31.(5년)

나. 주요 위탁내용

- 서울특별시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관리 및 운영
 - 시설보호대상 중증 치매·중풍 노인 등의 입소보호
 -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입소(이용)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4. 1.)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23. 6.)
 - 2025년 시립노인요양시설(영보, 송파) 민간위탁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5636)
- 민간위탁 필요성
 -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 대응을 위해 장기적·지속적인 서비스 필요
 - 노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5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 작성자 : 복지실 돌봄복지과 정소율 (☎2133-7422)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어린이집 및 영유아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5.9.30.일자로 협약이 만료됨 (' 22.10.1.~' 25.9.30.)
- 나.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의 교육, 상담 등 지원을 총괄하며 서울시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 다. 법에서 정한 보육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어린이집 지원 및 컨설팅) 보육과정 컨설팅,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서울시 0세 전담반 교사 교육 등
- (양육자 지원) 양육코칭센터, 서울장난감도서관 운영, 시간제보육 지원, 양육상담, 공통 부모교육 지원 등
- (보육교직원 지원) 대체교사 및 조리원 지원, 보육교직원 안심 상담실 운영,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 (홍보·협력) 운영사업 홍보 및 육아관련 정보 공유, 자치구 육아 종합지원센터와 협력사업 추진 등

나. 위탁범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 시설, 장비, 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다. 위탁기간 : ' 25.10.1.~' 28.9.30.

라.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현 위탁기간	' 25년 위탁금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숙명여자대학교	' 22.10.1.~' 25.9.30.	2,031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이성민 (☎2133-5093)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사회복지시설)임
- 나.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서울식물원점)은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기 관 명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2층
- 사용면적 : 2층, 222㎡ (67평)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아동 17명(회당) / 종사자 4명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 관리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양육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 5년(2025. 9. ~ 2030. 9.)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 25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25.3.7.)
 - ' 25년 소요예산(안) : 185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운영 사무를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예산조치 : 2025년 추경 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황윤지 (☎ 2133 - 480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서울시 서남권 시민들의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서남권 거점 공공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나.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자 진료와 병원 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중
- 다. 현 위·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25.8.26.)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병원 경영이라는 수익성을 부가적으로 추구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공공의료 기관의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 진료와 일반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시설물 운영·관리 및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의료 확충사업 등 공공의료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신정동)
- 시설규모 : 대지 11,189.40㎡, 건물 39,262.5㎡(지하4층, 지상8층)
- 지원시설 : 서남권 거점 공공종합병원
- 개원일자 : 2011년 5월



·종별 : 종합병원
 ·층고 : 지하4층, 지상8층
 - 외래부 : 진료실, 검사실, 재활의학센터 등
 - 병동부 :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정보통합시스템 : EMR, PACS, OCS

마. 민간위탁기간

○ 2025년 8월 27일 ~ 2030년 8월 26일(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 8,955,570천원('25년 예산)

○ 산출근거

(단위 : 본예산, 천원)

구 분	'24년도 예산	'25년도 예산
합 계	11,458,272	8,955,570
민간위탁금	8,894,174	4,889,463
공공의료 손실보전	8,132,418	3,635,000
건강돌봄 네트워크	425,756	454,463
서틀버스 운영	300,000	300,000
전신용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CT) 리스	-	500,000
노후설비부속교체	36,000	-
민간위탁사업비	2,564,098	4,066,107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 강화	980,038	2,597,844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	670,000
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	-	274,230
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	-	124,033

구 분	'24년도 예산	'25년도 예산
디스플레이 설치	-	400,000
식당 노후환경개선 공사	167,500	-
입원환자용 냉장고 교체	22,000	-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1,374,560	-
노후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 교체	20,000	-

※ 세부 산출근거 : 붙임 1

- 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조직담당관-2384, '25.3.7.) : 적정(권고)
- (권고내용)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진료인력 및 진료서비스 유지되도록 대책 마련
 - (대 책) 수탁기관 적격자심의 시, 고용유지·승계 정도를 포함하여 평가
 - 고용유지·승계 정도 80% 이상 의무
 -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기준,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이숙중 (☎ 2133-9248)

붙임 1

- 산출근거
「민간위탁금」
- ▶ 공공의료 손실보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공의료손실보전	8,507,000	7,927,000	8,269,296	8,132,418	3,635,000

- ▶ 건강돌봄 네트워크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계	454,463	
인건비	318,083	간호사(4명), 사회복지사(2명)
복리후생비	43,000	
의료사회사업비	93,380	치료지원 사업비 퇴원연계 대상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사업비 건강 취약계층 방문진료·방문서비스 운영비 방문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대상자 자조모임 운영비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건강강좌) 운영비 건강포스터 및 교육자료 제작

- ▶ 셔틀버스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외주용역비	300,000	서남병원 셔틀버스 운영 4대

- ▶ 전신용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CT) 리스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리스료	500,000	CT 장비 리스 1식

「민간위탁사업비」

▶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 강화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계		2,597,844	
의료 장비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	2,297,844	응급실 CT 외 6점
	서남병원 위탁 운영 관련	300,000	

▶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건물	670,000	바닥 및 벽체 균열 보수 등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 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계	274,230	
기타무형자산	228,800	·환자동의서작성솔루션(SW)
공기구 비품	45,430	·태블릿 모니터, 모바일 태블릿, 서버 스토리지 등

▶ 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공기구 비품	124,430	·방화벽 2식, 웹방화벽 1식

▶ 디스플레이 설치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공기구 비품	400,000	·디스플레이, 영상송출장치, 디지털믹서 등 개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역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운영기간이 2026. 1. 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시로 반환되는 주차장으로서,
- 나. 전문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설공단에 주차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주차장명 : 양재역 주차장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3(강남대로 221)
- 시설규모 : 대지 7,927.7㎡, 연면적 46,640㎡(지하4층/지상5층)
 - (주차장) 자주식 894면(연면적 34,268㎡)
 - (부대시설) 점포 69개(연면적 12,372㎡)
- ※ 민자운영 : '96. 1. 6.~'26. 1. 5.(30년, (주)동성종합건설 및 대림토건(주))



위치도



현장사진

나. 주요 대행업무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기간 : '26. 1. 6.~'26. 12. 31.(11개월 25일)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5년주기 갱신체결)” 기간 만료일까지
- 대행업무
 - 양재역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차 업무 및 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

- 대행업무 수행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에 따라 관리대행 업무 수행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

- 체결일자 : '21.12.31.
- 체결기관 : 서울시 - 서울시설공단
- 대행시설 : 공영주차장 133개 시설
- 대행기간 : '22.1.1.~' 26.12.31.(5년간)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1항
5년마다 갱신 협약체결

○ 주차장 운영

주차장명	급지	구획수	운영시간	주차요금			비고
				시간주차	1일요금	월정기권	
양재역	1	894	연중무휴 24시간	400원 (5분당)	28,800원	250,000원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민자사업 종료 이후 우리시로 반환되는 양재역 공영주차장은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양재역에 인접한 대규모 주차장으로서 공공성 및 운영 안정성,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
- 서울시설공단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양재역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대행함으로써, 축적된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이용 활성화가 가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5.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기부채납한자(단,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26년 예산 반영(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통실 주차계획과 채한샘(☎ 2122-2363)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나. 본 정비계획은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장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정비방안 등 정비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법률 검토, 전문가 자문, 자치구 협의 및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본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안)

구분	계	완료 (해결)	공공주도 (취득정비 / 위탁사업/대행사업)	철거 (직권철거/철거명령)	공공지원 (공사비보조/분쟁조정)	안전조치 명령
개소	12	1	0	1	0	10

※ 안전 조치 명령 대상(10건) 중 해체완료 2건, 공사재개 가능 6건

나.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3차) 수립

○ 정비계획 내용

- 대상 건축물 현황 등 실태조사(현황, 공사중단 시기 및 원인, 이해관계자, 권리관계 등)
-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설정, 대상 건축물의 특성별 분석
- 합리적 정비 방법 검토·결정, 대상 건축물별 대안 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 정비기금 관련 조례 검토 및 제도 개선 방안 고찰

다. 추진경위

- ' 22.12.31.: 제3차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기본계획 고시 (국토부)
- ' 24.01.18.: 제3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방침)
- ' 24.03.27.: 용역 계약체결
- ' 24.04. ~ 08. : 장기방치건축물 현장 실태조사 및 분석
- ' 24.09.25. : 제3차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 ' 24.12.19. : 1차 이해관계인 사업설명회 및 의견 수렴
- ' 25.01.09. : 2차 이해관계인 사업설명회 및 의견 수렴
- ' 25.03.13. : 제3차 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정비계획(안) 총괄 1부.

※ 작성자: 주택실 건축기획과 전지현(☎ 2133-7113)

(붙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총괄

○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총12개소

- 완료(1개소), 안전조치명령(10개소), 철거명령(1개소)

No.	소재지		용도	중단 기간	공공주도			철거		공공지원		안전 조치 명령	비고
					지자체 주도 (취득)	위탁 사업	대행 사업	직권 철거	철거 명령 (허가 취소)	공사비 보조	분쟁 조정		
1	종로구	동숭동 25-3	단독 주택	13년 1개월								●	-
2		명륜3가 142-1	단독 주택	20년 1개월								●	공사재개 추진 중
3		평창동 566-1	기타 시설	20년 8개월								●	매도추진 중
4		평창동 389-1외 2필지	공동 주택	19년 8개월								●	해체공사 완료
5	도봉구	방학동 705-9	공동 주택	11년 1개월								●	공사재개 예정
6		방학동 611-2	공동 주택	4년 1개월	-	-	-	-	-	-	-	-	사용승인 완료
7	관악구	봉천동 704-1	주상 복합	11년 8개월					●				해체공사 예정
8	강남구	청담동 5-18외 5필지	판매 시설	14년 11개월								●	공사재개 예정
9	중랑구	망우동 산69-1외 8필지	판매 시설	24년 8개월								●	-
10		면목동 14-10외 1필지	단독 주택	10년 2개월								●	소송 중
11	금천구	독산동 146-8	공동 주택	4년 10개월								●	공사재개
12	성북구	성북동 1-157	단독 주택	8년 8개월								●	해체공사 완료

서울특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규제혁신을 통해 주택정비형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안)을 마련하고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 역세권임에도 지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구역 등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에 대해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위원회 심의를 통해 350m까지 완화 가능) 이내 해당 면적 준주거로 종상향 원칙 제시
 -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특성과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상향 적용구역이나 면적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입체공원 설치 및 제공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기준
- 사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입체공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공원 조성 및 제공 시 조성비용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다. 높이규제지역 재개발 사업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 완화
-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에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높이규제 지역으로 명시
 - 높이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
- 라. 재개발 사업의 입안동의율 용어 및 동의서 서식 변경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장구와 정비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병행 이행할 수 있도록 입안동의 → 정비구역 지정 동의 용어 변경, 동의서 서식 개정
- 마. 기타 합리적인 기준 운용을 위한 경과규정 보완
- 재건축 사업의 현황용적률 관련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경우 종전의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보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임

※ 작성자 : 주택실 주거정비과 한희진 (☎2133-7206)

공동주택과 유태윤 (☎2133-7138)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홍익대학교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학교	대 학 (홍익대학교)	마포구 상수동 72-1번지 일대	94,508	-	94,508	서고시 제165호 (1976.07.15.)	

나.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구역계획

구 역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①	15,284	증) 35	15,319	
		②	②	22,047	감) 3,412	18,635	
		③	③	22,987	감) 4,561	18,426	
		④	④	8,435	증) 271	8,706	
유지	상징경관구역	⑤	⑤	8,806	증) 16,343	25,149	
	외부활동구역	⑥	-	8,676	감) 8,676	-	삭제
보전	녹지보존구역	⑦	⑥	8,273	-	8,273	
합 계				94,508	-	94,508	

- 밀도계획 (건폐율)

구 분	용도지역면적(㎡)		조례 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799	1,173	60	35.62	50.93	40	55	
제2종 일반주거지역	90,709	93,335						
합 계	94,508	94,508	60	35.62	50.93	40	55	

※ 밀도산정시 제외면적 : 해당없음

※ 실제 용도지역 면적변경은 없으나 서고시(제2018-311호) 밀도산정 기준면적 오기입으로 인한 변경

- 밀도계획 (용적률)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 용적률 (%)	사용용적률(%)		관리용적률(%)		완화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799	1,173	200	199.50	199.53 (239.53)	200	200 (240)	-	40.00	혁신성장 시설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90,709	93,335								
합 계	94,508	94,508	200	199.50	199.53 (239.53)	200	200 (240)	-	40.00	

※ ()는 혁신성장시설에 따른 완화용적률 포함임

※ 실제 용도지역 면적변경은 없으나 서고시(제2018-311호) 밀도산정 기준면적 오기입으로 인한 변경

※ 완화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 5호 규정에 의거 혁신성장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120% 이하의 범위에서 밀도산정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혁신성장시설 완화용적률 : 혁신성장시설 관리면적(37,803.20㎡) / 홍익대 캠퍼스면적(94,508㎡) = 40.00%

－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구역		구역면적		조례 용적률 (%)	사용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완화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①	15,284	15,319	200	313.09	312.38	113.09	112.38	313.09	312.38	-	-	일반관리구역 ○5구역에서 17,215.1㎡ 용적 이전받음
②	②	22,047	18,635	200	210.01	309.21	10.01	109.21	210.01	309.21	-	-	일반관리구역 ○5구역에서 20,351.99㎡ 용적 이전받음
③	③	22,987	18,426	200	208.74	230.77	10.80	30.77	210.80	230.77	-	-	일반관리구역 ○5구역에서 1,893.08㎡ 6구역에서 3,777.26㎡ 용적 이전받음
④	④	8,435	8,706	200	357.80	346.67	157.80	146.67	357.80	346.67	-	-	일반관리구역 ○6구역에서 12,768.74㎡ 용적 이전받음
⑤	⑤	8,806	25,149	200	184.24	41.33 (191.65)	-15.76	-156.91	184.24	43.09 (193.41)	-	150.32	상징경관구역 ○1구역으로 17,215.1㎡ 2구역으로 20,351.99㎡ 3구역으로 1,893.08㎡ 용적 이전함 ○혁신성장시설 완화 37,803.2㎡
⑥	-	8,676	-	200	-	-	-200.00	-	-	-	-	-	-
⑦	⑥	8,273	8,273	200	-	-	-200.00	-200.00	-	-	-	-	녹지보존구역 ○3구역으로 3,777.26㎡ 4구역으로 12,768.74㎡ 용적 이전함
합 계		94,508	94,508	200	199.50	199.53 (239.53)	-	-	200.00	200.00 (240.00)	-	40.00	

※ ()는 혁신성장시설에 따른 완화용적률 포함임

※ ⑤ 상징경관구역 내 혁신성장시설의 완화용적률 산정

－ 혁신성장시설 완화용적률 : 혁신성장시설 완화면적(37,803.2㎡) / ⑤구역 부지면적(25,149㎡) = 150.32%

- 높이계획

구역 구분		높이(m)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①	①	해발 65m 이하, 해발 90m 이하	해발 65m 이하, 해발 90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②	②	해발 50 m이하, 해발 78m 이하	해발 50 m이하, 해발 102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③	③	해발 35m 이하, 해발 102m 이하	해발 35m 이하, 해발 102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④	④	해발 35m 이하, 해발 102m 이하	해발 35m 이하, 해발 102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⑤	⑤	해발 50m 이하, 해발 102m 이하	해발 50m 이하, 해발 70m 이하	상징경관구역
⑥	-	해발 35m 이하	-	삭제
⑦	⑥	건축행위 배제	건축행위 배제	녹지보존구역

- 변경 건축물 조서

구역		건물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②	⑤	6	과학관 전시장	756.21	-	3,070.47	-	2,217.33	-	1/3	-	철거
		13	여중신관 →제1강의동	1,430.02	-	3,229.62	-	2,690.28	-	1/2	-	철거
③	⑤	7	초등학교 →제4강의동	1,364.83	-	5,456.76	-	5,360.26	-	1/4	-	철거
③	③	18	제2신관	1,062.55	927.43	9,809.10	9,755.12	8,838.00	8,784.02	1/10	1/10	철거
		27	아트앤 디자인밸리	1,563.23	1,746.78	16,913.50	17,081.70	1,772.90	1,820.05	4/2	4/2	준공에 의한 면적 정정 및 일부 철거
④	④	23	홍문관	3,886.61	3,886.61	61,743.19	61,120.97	30,180.74	30,180.74	6/16	6/16	일부 철거
⑥	⑤	28	뉴홍익	-	17,963.66	-	149,174.91	-	48,197.53	-	5/9	신축 (혁신성장시설)
합 계				10,063.45	24,524.48	100,222.64	237,132.70	51,059.51	88,982.34			

- 혁신성장계획

1) 혁신성장 용도 및 건축물 조서

건물명	구역	건축면적(㎡)	연 면 적(㎡)	비고									
뉴홍익	⑤	17,963.66	• 연면적 : 149,174.91 • 용적률산정연면적 : 48,197.53 • 지하층연면적 : 100,977.38 • 완화용적률 : 150.32% • 완화연면적 : 37,803.20	<혁신성장시설>(53.41%) • 연면적 : 25,743.67㎡ ① 산학혁신(4,977.59㎡)(10.33%) - 메이커스페이스, 창업보육시설 ② 미래인재육성(16,386.78㎡)(34.00%) - 첨단융합연구동 ③ 지역기여(4,379.30㎡)(9.09%) - 박물관, 키즈카페 <기타>(46.59%) • 연면적 : 22,453.86㎡ - 교육연구시설 <면적기준> <table><tr><th>구분</th><th>기준</th><th>적용</th></tr><tr><td>혁신성장기능</td><td>50%이상</td><td>53.41%</td></tr><tr><td>미래인재육성, 산학혁신</td><td>30%이상</td><td>44.33%</td></tr></table>	구분	기준	적용	혁신성장기능	50%이상	53.41%	미래인재육성, 산학혁신	30%이상	44.33%
				구분	기준	적용							
혁신성장기능	50%이상	53.41%											
미래인재육성, 산학혁신	30%이상	44.33%											
※ 기준 : 지상연면적													

※ 기준 : 지상연면적

※ 완화 연면적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 5호 규정에 의거 혁신성장시설 설치에 따라 캠퍼스 내 용도지역별 용적률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한 면적

2) 캠퍼스 완화 용적률 산정

용도지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 용적률(%)	완화가능 조례용적률(%)	관리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홍익대 캠퍼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173.00	200	40	-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3,335.00				(240)	
합 계		94,508.00	200	40	-	200 (240)	

※ ()는 혁신성장시설 설치에 따른 완화용적률 포함임

3) 캠퍼스 완화 용적면적 산정

용도지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 용적률(%)	용적률산정 기준면적(㎡)	혁신성장시설 완화가능용적률(%)	완화가능 면적(㎡)	혁신성장시설 관리면적(㎡)	잔여면적 (㎡)
홍익대 캠퍼스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이하)	1,173.00	200	189,016.00	20	37,803.20	37,803.20	-
	제2종일반주거지역	93,335.00						
합 계		94,508.00	200	189,016.00	20	37,803.20	37,803.20	-

※ 홍익대캠퍼스 내 완화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 5호 규정에 의거 혁신성장시설 설치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함.

3. 입안사유

- 첨단(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금회 신축예정인 뉴홍익 건물을 혁신성장시설로 지정하고,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통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시계획시설 : 학교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 2025. 3. 6. ~ 3. 20.
- 계 재 신 문 : 서울경제, 경향신문
- 열 랑 장 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의견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6. 관련부서 검토의견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지역기여시설 조성 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지역기여시설 조성	○ 금번 설치예정인 지역기여시설(키즈카페, 박물관)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학교 정문에서 가까운 위치에 저층부(지상1~3층)로 계획함	반영
	○ 주민들을 위한 지역기여시설 설치 필요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등) 설치함으로써 부족했던 공공체육시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	○ 신축되는 건물(뉴홍익) 내 지역기여시설로 지하1층에 체육시설(피트니스센터)을 추가로 계획하겠음 ※ 뉴홍익의 건축물은 건축계획상 수영장 시설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반영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 상시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사항으로 사업승인 신청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신청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완료하겠음	반영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친환경건물과	○ 금회 교내 신축 사업 연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제1호 자목 및 비교 제4호 라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 전 협의를 득하여야 함	○ 건축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후 완료하겠음	반영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공통사항] ○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개발로 인한 물순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영향 개발기법(LID)와 유류물자원 활용체계를 계획에 반영 - 물순환 및 물재이용 관련 계획 요소는 사업의 초기(구상)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고려하여 효과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 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등의 물자원은 사업대상지 내·외 관리용수, 친수용수로 재이용하거나, 인접한 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하수도로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사업 인허가시 협의하겠음	반영

7. 기타

○ 환경성 등 관련사항 검토결과

- (환경성) 녹지훼손·지형변화·경관·일조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시행 시 환경저해요소(소음, 진동 등)의 저감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교통성) 당해 계획으로 인해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평가(변경) 실시할 예정임
- (경관성) 학교 내부에 조성하는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의 시설로 경관상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재해취약성) 대상지는 폭우●폭염●폭설 부문이 3등급, 가뭄●강풍이 4등급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우수배제 시스템·녹지공간 확보·빗물이용시설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계획하였음

○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는 493,700백만원이며 재원은 건축기금 자금 조달 예정임

(단위: 백만원)

공종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493,700	3,289	10,813	49,670	95,674	142,957	142,957	48,340
뉴홈익	493,700	3,289	10,813	49,670	95,674	142,957	142,957	48,340

○ 추진경위

- '79.07.15.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02.03.25.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 '18.09.27.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
- '24.12.20.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신청
- '25.03.06.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3.20.)
- '25.03.21.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윤효진 (☎ 2133-8412)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안) 1부

3. 혁신성장시설 세부관리기준 주요내용 1부. 끝.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